

[인사규정 제14조 사원의 결격사유]

제14조(사원의 결격사유)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판명된 자
9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10. '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' 제82조 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에 의거,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, 부당채용 된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.